仲裁硏究, 第 29 卷 第 2 號
2019년 6월 1일 발행, pp. 133~159
http://dx.doi.org/10.16998/jas.2019.29.2.133

논문접수일 2019. 04. 30.
심사수정일 2019. 05. 30.
게재확정일 2019. 05. 31.

# 2019년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중재제도의 개혁동향

## 2019 Reform of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JCAA) Arbitration Rules

김영주*
Young-Ju Kim

〈목 차〉

Ⅰ. 서 론
Ⅱ. JCAA 상사중재규칙의 개정
Ⅲ.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의 제정
Ⅳ. UNCITRAL 중재관리규칙의 개정
Ⅴ. JCAA 중재제도 개혁의 취지와 시사점
Ⅵ.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JCAA 상사중재규칙,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 UNCITRAL 중재관리규칙, 중재인의 조사의무, 중재인 보수, 일본중재법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yjkim0323@naver.com)

# Ⅰ. 서 론

일본의 민간상설중재기관으로는 크게 ① 일본해운집회소(日本海運集會所, the Japan Shipping Exchange, In.)[1], ② 일본상사중재협회(日本商事仲裁協會,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JCAA)[2], ③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日本知的財産仲裁センター, Japan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Center, JIPAC)[3], ④ 변호사회중재센터(辯護士會仲裁センター)[4], ⑤ 일본스포츠중재기구(日本スポーツ仲裁機構, the Japan Sports Arbitration Agency, JSAA) 등이 있다.[5] 상사분쟁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이며 규모가 큰 민간중재기관으로는 일본상사중재협회(이하 'JCAA'라 한다)를 꼽을 수 있는데, 일본이라는 국가 규모에 비해 그 국제적인 지위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 할 수 있다.[6] 예를 들어, 아시아 지역 중재기관 중에서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나 홍콩국제중재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KIAC)가 대표적인 국제중재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한상사중재원(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이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등도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재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7]

JCAA 역시 2019년 초,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재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에 운용 중이던 각 중재규칙들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또 새롭게 제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JCAA는 기존 2가지의 중재규칙인 ① '상사중재규칙'(商事仲裁規則,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이하 'JCAA 상사중재규칙'이라 한다)[8]과 ② 'UNCITRAL 중재관리규칙'(UNCITRAL 仲裁

1) 해사분쟁을 중재・조정을 통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의 유일한 해사분야 전문상설중재기관이다. 일반사단법인으로서, 1926년 '주식회사 고베해운집회소'(1921년 설립) 산하조직으로 있던 '중재부'를 전신으로 하고 있다.

2) 상사분쟁 및 국제거래분쟁을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사단법인으로, 1950년 일본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경제단체연합회 등 8개의 단체가 발기인으로 하여 일본상공회의소 내의 위원회로서 창설된 '국제상중재위원회'를 전신으로 한다. 1953년 일본상공회의소로부터 독립하여, '국제상사중재협회'로 개칭・설립되었다. 2003년 현재의 일본상사중재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3) 1998년 일본변호사연합회와 변리사회가 공업소유권 전문분쟁처리기관으로서 공동 설립한 '공업소유권중재센터'를 전신으로 한다. 2001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4) 1998년 일본변호사연합회와 변리사회가 공업소유권 전문분쟁처리기관으로서 공동 설립한 '공업소유권중재센터'를 전신으로 한다. 2001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5) 小島武司・猪股孝史, 「仲裁法」, 日本評論社, 2014, p.25.

6) 김갑유 외 (편), 「중재실무강의」, 개정판, 박영사, 2017, p.111.

7) 김태훈・차경자,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규칙의 최근 개정내용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2, p.4.

8) JCAA 상사중재규칙은 2015년 12월 10일 최종 개정된 바 있다.

管理規則, Administrative Rules for UNCITRAL Arbitration)[9]을 2019년 1월 1일자로 개정하였고, 새롭게 ③ '인터랙티브 중재규칙'(インタラクティヴ仲裁規則, Interactive Arbitration Rules, 이하 'JCAA 인터랙티브중재규칙'이라 한다)을 2019년 1월 1일자로 제정하였다.

이들 개정은 2017년 6월 9일 일본 내각의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인력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17－人材への投資を通じた生産性向上)에 관한 각의결정 중 '국제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를 위한 대책'에 기반하고 있다.[10] 이와 더불어 국제중재를 위한 일본 법무성의 시설 제공과 관련한 정부시책들도 동시에 행해지고 있고, 일본 내에서 외국변호사의 중재대리에 관한 제약 완화를 위한 법개정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다.

2019년 JCAA의 중재제도 제·개정에 관하여는 국내 선행연구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11] 본 논문에서는 이에 관한 부분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추후 우리나라 중재제도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참고자료로 삼고자 한다.[12]

이하에서는 먼저 JCAA 상사중재규칙의 2019년 주요 개정사항들을 살펴보고(Ⅱ), 2019년 새롭게 제정된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Ⅲ). 마지막으로 JCAA에서 도입·운용 중인 UNCITRAL 중재관리규칙의 2019년 개정사항도 개관해 보기로 한다(Ⅳ). 이후, 제·개정된 JCAA 중재규칙들의 적용상의 관계, 성격, 취지 등을 살펴본 후, 실무적 시사점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Ⅴ).

---

9) 기존 명칭은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의 관리 및 절차에 관한 규칙'(UNCITRAL仲裁規則による仲裁の管理および手續に關する規則, Administrative and Procedural Rules for Arbitration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으로 2009년 7월 1일 최종 개정된 바 있다. 이번 2019년 개정에서는 기존 명칭이 현재의 'UNCITRAL 중재관리규칙'으로 변경되었다.

10)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국제중재를 위한 법무성의 시설제공과 관련한 정부시책들이 행해지고 있고, 일본 내 외국변호사의 중재대리에 관한 제약 완화를 위한 법개정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일본 내각부 웹사이트,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2017/2017_basicpolicies_ja.pdf> (최종검색일 2019. 3. 5) 참조.

11) 일본 중재법 및 JCAA 중재규칙의 관한 주요한 국내 선행연구로는 김광수, "동북아시아 국제상사중재의 과제와 전망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7, pp.217-234; 김상찬, "일본의 ADR 법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6, pp.127-160; 김석철, "동북아 주요국의 중재법제 비교연구", 「중재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7, pp.31-56; 김선정, "일본의 금융분야 ADR에 관한 검토", 「중재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0, pp.121-145; 김언숙, "일본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 적용법규와 승인집행거부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0, pp.25-46; 서정일, "한국중재법과 일본중재법의 비교 및 문제점 고찰", 「중재연구」, 제7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1997, pp.294-324; 최석범·정재우·김태환, "한·일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비교법적 고찰", 「중재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6, pp.81-119 등이 있다.

12) JCAA 중재제도의 2019년 제·개정 현황에 대하여는 道垣內正人, "JCAAの仲裁制度の改革について: ビジネス界のあらゆるニーズに對応する3つの仲裁規則の紹介", 「JCAジャーナル」, 66卷 1号 (日本商事仲裁協會, 2019. 1), pp.6-15. 이 자료는 JCAA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는 <http://www.jcaa.or.jp/new/docs/c5811a3b59484aaba909ca26520c21c37a912817.pdf> (최종검색일 2019. 3. 5) 참조; 道垣內正人, "日本商事仲裁協會(JCAA)の新しい動き－3つの新仲裁規則の施行等", 「NBL」, 1141号 (商事法務, 2019. 3), pp.4-11. 道垣內正人의 이 두 논문은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본고에서는 JCAA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인용한다.

# Ⅱ. JCAA 상사중재규칙의 개정

## 1. 개관

당사자들이 JCAA를 중재기관으로 지정하고 중재규칙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지금까지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JCAA 상사중재규칙이 적용되는 예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역시 명시적인 적용범위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적도 상당하였다.[13] 이에 2019년 개정에서는 종전에는 없던 적용범위의 원칙규정을 JCAA 상사중재규칙상 명문화하였다. 이외에 주요한 개정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고 원활한 중재절차를 실현하기 위해, 의장중재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중재인의 공정・독립성 규정을 강화하였다. 또한 다른 중재기관에서는 볼 수 없는 JCAA 상사중재규칙만의 독특한 내용들도 신설되었다. 예를 들어, 중재인이 보조자를 이용하는 경우 투명성 확보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점이나 중재판정에서 소수의견 제시를 금지하도록 한 점이다. 중재인 보수와 관련해서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시간제보수 방식을 유지하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보수액의 일괄적 상한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주요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2019년 JCAA 상사중재규칙의 변경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 2. 중재인의 공정・독립성에 관한 조사의무

2019년 개정에서는 JCAA 상사중재규칙상 중재인의 공정・독립성 규정이 크게 강화되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중재인과 당사자 간의 이해상충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재판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14]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서 JCAA 상사중재규칙에서는 중재인의 공정성・독립성에 관한 고지의무 이외에 '조사의무'를 별도로 신설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인은 재임 중 공정하고 독립하지 않으면 아니된다.[15]

둘째, 중재인 취임의 의뢰를 받은 자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

13) 道垣內正人, 前揭論文(주12), p.3.
14) 手塚 裕之・河端 雄太郎, "國際商事仲裁の新潮流と仲裁法制のさらなる現代化", 「自由と正義」, Vol. 67 No. 7, 日本弁護士連合會, 2016, pp.19-20.
15) JCAA 상사중재규칙 제24조 제1항.

성에 의심을 살만한 우려가 있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 결과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중재인 취임의 의뢰를 받은 자는, 중재인 취임을 사퇴하거나 또는 취임의뢰를 부탁한 자에게 그러한 사실 전부를 서면으로 고지하여 취임의뢰의 철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겨야 한다.[16]

셋째, 중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서면[17]으로 지체 없이 당사자 및 JCAA에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의심을 살만한 우려가 있는 사실의 전부를 고지하거나 또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표명하여야 한다.[18]

넷째, 중재인은 중재절차의 진행 중,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의심을 살만한 우려가 있는 사실(이미 고지한 것은 제외)에 대해 '합리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 결과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중재인은 지체 없이 당사자 및 JCAA에게 그러한 사실 전부를 서면으로 고지하여 취임의뢰의 철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겨야 한다. 중재인 취임 시, 취임 이후 그러한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고지만으로는 중재인의 고지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19]

중재인의 조사의무는 그 동안 학설로서만 인정되어 왔을 뿐 일본법상 명문으로 인정된 중재인의 의무는 아니었다. 그러나 조사의무는 고지의무 이행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던 중 최고재판소 2017. 12. 12. 결정[20]에서 고지대상 사실에 대한 중재인의 조사의무가 처음으로 인정되었고,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21] 결국 일본 중재법 개정 전의 실무적 차원에서 JCAA 상사중재규칙에 도입된 것이다.

중재인의 조사의무와 관련하여 해석상 문제가 되는 것은 중재인이 이해상충에 관한 사실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 인식의 결여를 이유로 의무위반이 그 자체로 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기 위해 조사행위와 같은 특별한 행위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학설상으로는 대체로 중재인이 고지대상

16) JCAA 상사중재규칙 제24조 제2항.
17) 이 서면을 JCAA 상사중재규칙에서는 '공정・독립 표명서'(公正獨立表明書)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18) JCAA 상사중재규칙 제24조 제3항.
19) JCAA 상사중재규칙 제24조 제4항.
20) 最高裁 第三小法廷 平成29年 (2017年) 12月12日 決定, 平成 28年 (許) 第43号. 본 결정에서 최고재판소는 "중재인의 고지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중재인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② 만약 인식하지 못했다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를 조사하여 통상적으로 판명될 수 있는 사실이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고지대상 사실에 대한 중재인의 합리적 조사의무를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본 결정의 평석으로는 中野俊一郎, "仲裁人が当事者に對して仲裁法18條4項にいう『自己の公正性又は獨立性に疑いを生じさせるおそれのある』事實が生ず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抽象的に述べたことは、同項にいう『既に開示した』ことに当たるか (最高裁平成29年12月12日第3小法廷決定)", 「民商法雜誌」, 第154卷 第6号, 有斐閣, 2018, pp.187-200; 김영주, "중재인의 고지의무와 합리적 조사의무 - 일본 최고재판소 2017년 12월 12일 결정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8, pp.217-248 등 참조.
21) 岡田紀彦, "仲裁人が,当事者に對して仲裁法18條4項にいう『自己の公正性又は獨立性に疑いを生じさせるおそれのある』事實を開示し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 同項所定の開示義務に違反したというための要件－最三小決平成29・12・12", 「ジュリスト」, 1517号, 有斐閣, 2018, p.101.

이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라도 중재법 제18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일정한 범위의 조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견해[22]가 통설이다. 그러나 조사의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다시 학설이 나뉜다.

다수설[23]에 따르면, 중재인이 고지대상이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중재인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사를 행하면 족하다고 한다. 다수설은 ① 중재법 제18조 제4항의 취지가 중재인이 인식한 사실만을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 ② 그렇다고 중재인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사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③ 국제변호사협회의 '국제중재에서의 이해관계 상충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지침'(IBA Guidelines on Conflicts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하 'IBA 이해관계 지침') (2014년 개정판)에서도 실무적인 관행으로 합리적 조사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든다.

반면에 중재인이 고지대상이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중재인은 중재인 취임의뢰를 받은 시점 또는 특별히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소수설[24]도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중재인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를 행한다는 것 역시 추상적이며, 중재인 취임 이후에도 계속적인 조사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중재절차 수행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9년 개정 JCAA 상사중재규칙상으로는 "중재인 취임 시, 취임 이후 그러한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고지만으로는 중재인의 고지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므로, 중재인이 고지대상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음에도 합리적인 조사를 행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고, 부지의 항변으로도 대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3. 중재인의 보조자 사용

2019년 개정 JCAA 상사중재규칙에서는 중재인의 '보조자' 사용에 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다.

첫째, 중재인은 중재판정을 포함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25]

22) 小島武司・猪股孝史, 前揭書(주5), p.220; 豊田博昭, "仲裁法の論点(5) - 仲裁人の忌避(下)", 「JCAジャーナル」, 53巻 10号, (日本商事仲裁協會, 2006), p.10; 三木浩一・山本和彦 (編), 「新仲裁法の理論と實務」(ジュリスト增刊), 有斐閣, 2006, p.164; 中村達也, 「仲裁法の論点」, 成文堂, 2017, p.396

23) 高杉直, "國際商事仲裁における仲裁人の開示義務違反と仲裁判斷の取消", 「市民生活と現代法理論」(三谷忠之先生古稀祝賀), 成文堂, 2017, p.261; 三木浩一・山本和彦, 前揭書(주22), p.164; 中村達也, 前揭書(주22), p.396.

24) 日下部眞治, "忌避および利害關係情報開示に關する諸問題", 「仲裁・ADRフォーラム」, Vol. 1, (日本仲裁人協會, 2007), p.59.

25) JCAA 상사중재규칙 제33조 제1항.

둘째,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 아닌 한, 단독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은 중재인의 임무수행을 보조하는 제3자(이하 '중재인보조자'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중재인보조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중재인보조자에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계산방법 등을 밝혀야 하고 서면으로 모든 당사자에게 양해를 얻어야 한다.[26]

셋째, 중재인보조자에 대해서는 중재인과 동일한 공정·독립성 규정(JCAA 상사중재규칙 제24조) 및 비밀준수의무(JCAA 상사중재규칙 제42조 제2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7]

넷째, 중재인보조자의 보수 및 경비는 JCAA 상사중재규칙 제101조에서 정한 단독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의 경비로 한다. 다만 중재인보조자를 이용한 중재인에 대해 JCAA 상사중재규칙 제94조에서 정한 상한액을 산정할 때에는 중재인보조자의 보수액을 당해 중재인의 보수로 보아야 한다.[28]

실무에서는 당사자나 다른 중재인의 양해를 얻지 않고 또는 통지도 없이, 중재인이 제3자를 자신의 보조자로 이용하여 중재절차에 관한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일이 종종 있다. 이 경우에는 중재인에 대한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기대가 훼손될 수 있고, 중재인의 보수산정이나 비밀준수와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2019년 개정에서는 JCAA 상사중재규칙상 중재인의 보조자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중재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쟁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이에 관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29]

## 4. 소수의견의 기재금지

JCAA 상사중재규칙의 2019년 개정사항 중 독특한 점으로는 '중재판정문의 구성'과 관련하여, 중재인 일부의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의 기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JCAA 상사중재규칙은 3인중재에 의한 중재판정부의 경우,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중재판정만을 기재하여야 하고, 중재인은 소수의견을 어떠한 형태로든 중재판정부 바깥으로 유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다.[30]

대부분의 중재규칙은 다수결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1]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다수결에 동의하지 않는 중재인이 있을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3

26) JCAA 상사중재규칙 제33조 제2항.
27) JCAA 상사중재규칙 제33조 제3항.
28) JCAA 상사중재규칙 제33조 제4항.
29) 道垣内正人, 前揭論文(주12), p.4.
30) JCAA 상사중재규칙 제63조.
31) 만약 가부동수 등으로 다수의견이 부재하는 경우의 결정방법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중재규칙들에서 의장중재인이 단독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UNCITRAL 중재규칙 제33조 제1항; ICC 중재규칙 제31조 제1항; LCIA 중재규칙 제26.5조; SIAC 중재규칙 제32.7조 등 참조.

인중재에 의한 중재판정문에 다수 중재인들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은 소수 중재인들이 반대의견 내지는 소수의견을 별도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32] 물론 이와 같은 소수의견은 중재판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33]

JCAA 상사중재규칙의 이번 개정에서 이러한 소수의견 기재금지 조항을 신설한 것은 중재판정의 해석에 있어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에 있다. 이는 소수의견의 내용에 따라서는 해당 중재판정취소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34] 이렇게 소수의견의 기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이를 정하고 있는 중재규칙이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JCAA의 이러한 개정사항은 상당히 독특한 점이라 할 것이다.

또한 중재판정부의 판정내용은 본래 비공개가 원칙이다. 만약 소수의견을 개진한 중재인이 당사자선임 중재인인 경우 자신을 선임한 당사자에 대해 해당 당사자의 주장을 지지하였다는 점을 소수의견의 형태로 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중재인의 윤리위반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반영하여, 2019년 개정 JCAA 상사중재규칙에서는 소수의견 기재금지 사항이 명문화 되었다.

## 5. 신속중재절차

중재는 통상 단심제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중재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는 중재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35] 2019년 JCAA 상사중재규칙은 기존의 간이절차 규정을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첫째, 중재신청 시, 청구금액 또는 청구의 경제적 가치가 5,000만 엔[36] 미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속중재절차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3인중재에 의한 중재판정부 구성에 합의한 경우 또는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사건을 신속중재절차에 의하지 않겠다는 서면합의를 JCAA에 통지한 경우에는 신속절차가 아닌 일반 상사중재절차에 따른다.[37]

둘째, 중재신청 시, 청구금액 또는 청구의 경제적 가치가 5,000만 엔 이상이라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사건을 신속중재절차에 의한다는 서면합의를 JCAA에 통지한 경우에는 신속중재절차에 따른다.[38]

---

32) 齋藤梓, “JCAA仲裁規則改正”,「北米ニューズレター」, 2019年1月号, Nishimura & Asahi, 2019, p.7.
33) Gary B.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Vol. III: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2n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14, p.3054.
34) 道垣内正人, 前揭論文(주12), p.5.
35) 최준선,「국제거래법」, 제11판, 삼영사, 2018, p.432.
36) 외국통화로 환산되는 경우에는 중재신청일 직전 영업일의 ‘전신환매매기준율’(Telegraphic Transfer Middle Rate, TTM)을 포함한 적정한 교환율에 의한 일본 엔화로 환산한 금액에 의한다.
37) JCAA 상사중재규칙 제84조 제1항.
38) JCAA 상사중재규칙 제84조 제2항.

셋째, 신속중재절차에 의한 중재신청이 제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금액 또는 청구의 경제적 가치가 5,000만 엔 이상의 반대청구신청이 제기된 경우 또는 자동채권의 금액 또는 경제적 가치가 5,000만 엔 이상의 상계항변이 제출된 경우에는 일반 상사중재절차에 따른다.[39] 여기서 청구금액에 부수하는 이자, 기타 과실(果實), 손해, 위약금 또는 비용의 가액은 JCAA 상사중재규칙 제84조 제3항의 청구금액 또는 청구의 경제적 가치에 산입하지 않는다.[40]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신속중재절차에 의한다는 서면합의가 있다면 신속중재절차로 분쟁을 해결한다.[41]

넷째, 청구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수 없거나 그 산정이 극도로 곤란한 경우 또는 청구의 경제적 가치에 관해 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의 경제적 가치가 5,000만 엔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42]

기존 규칙상의 신속중재절차는 청구금액이 2,000만 엔 이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심리를 1회로 제한하고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재판정을 내릴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43] 그러나 2019년 JCAA 상사중재규칙에서는 통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달라진 경제사정을 반영하여 5,000만 엔 미만의 경우 신속중재절차에 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규칙상 신속중재절차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원칙적으로 심리기일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한 중재절차만을 진행한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가능한 한 단기로 심리기일을 열어야 한다.[44]

## 6. 중재인 보수

기관중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무국이 중재당사자들로부터 중재인의 보수와 비용을 징수하여 이를 중재인에게 지급한다. 이를 위해 중재기관은 당사자들로부터 납부 받는 중재인 보수 및 비용 산정에 관한 표를 중재규칙에 별첨으로 첨부해 두는 것이 통상적이고, 해당 중재기관의 홈페이지에 중재비용 산정 자동 계산기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45]

한편 중재인보수의 산정방식은 통상 금액확정방식과 시간제방식이 사용된다. 2019년 JCAA 상사중재규칙은 중재인 보수와 관련하여 기존 규칙과 같이 시간제보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상 발생하였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합리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다

39) JCAA 상사중재규칙 제84조 제3항.
40) JCAA 상사중재규칙 제84조 제4항.
41) JCAA 상사중재규칙 제84조 제3항.
42) JCAA 상사중재규칙 제84조 제5항.
43) 齋藤梓, 前揭報告書(주32), p.7.
44) JCAA 상사중재규칙 제88조.
45) 김갑유 외 (편), 전게서(주6), p.170.

음과 같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첫째, 중재인의 보수[46]는 시간단가에 중재시간을 계산한 시간제보수(time charge)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서의 시간단가는 5만 엔(소비세 불포함)으로 한다.[47]

둘째, 중재인보수의 상한액은 최소 200만 엔으로 한다. 단독중재의 경우 중재인보수 상한액은 청구금액이 100억 엔 이상의 경우에도 3,000만 엔을 상한액으로 한다.[48]

셋째, 당사자선임 중재인의 경우 중재인보수 상한액은 단독중재인 보수 상한선의 80%로 하고, 의장중재인의 중재인보수 상한액은 단독중재인 보수 상한선의 120%로 한다.[49]

넷째, 중재시간이 15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후의 시간단가는 당초 시간단가의 50%를 한도로 하고, 50시간마다 당초 시간단가의 10%씩 체감한다.[50]

다섯째,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모든 당사자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중재인보수의 시간단가, 상한액, 시간단가의 체감 및 중재인 보수의 감액 등에 대해 변경할 수 있다.[51]

여섯째, ①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중재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모든 중재인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 중재인의 사망, 기피, 해임(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해임을 제외) 또는 사임으로 인해 중재인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중재인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②의 경우라 하더라도, 복수 중재인의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사망 또는 질병에 의해 중재인이 흠결된 경우라면, JCAA는 그 시점까지의 중재시간, 최종적인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공헌도 및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당해 중재인의 보수액을 결정할 수 있다.[52]

일곱째,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에는,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중재인은 당사자 및 JCAA 간에 중재인 보수의 시간단가, 상한액, 시간단가의 체감 및 중재인 보수의 감액 등의 변경을 교섭할 수 없다.[53]

여덟째, 중재인의 항공운임은 비즈니스석 요금(다른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등급의 요금)으로,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1박당 6만 엔의 숙박비(식비 기타 비용 포함)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54]

아홉째, 긴급중재인의 보수는 청구금액 및 청구의 경제적 가치와 상관 없이 120만 엔으로 한다. 다만 긴급중재인이 긴급보전조치명령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중재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긴급중재인의 보수는 30만 엔으로 한다.[55]

---

46) JCAA 상사중재규칙에서는 중재인의 보수를 '보상금'(報償金)으로 표현한다.
47) JCAA 상사중재규칙 제83조 제1항・제2항.
48) JCAA 상사중재규칙 제94조 제1항.
49) JCAA 상사중재규칙 제94조 제3항.
50) JCAA 상사중재규칙 제95조 제1항.
51) JCAA 상사중재규칙 제97조 제1항.
52) JCAA 상사중재규칙 제96조 제1항・제2항.
53) JCAA 상사중재규칙 제98조.
54) JCAA 상사중재규칙 제101조.

이상과 같이, 2019년 JCAA 상사중재규칙은 중재인 보수에 대해 기존 규칙에서 불명확하던 부분들을 구체화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다. 특히 중요한 개정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중재인 보수의 시간단가에 관한 것이다. 기존 규칙에서는 이를 3만 엔에서 8만 엔의 범위 내에서 JCAA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중재인별로 시간단가가 달리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중재인 간 지위의 차별이나 의견의 우열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56]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에서는 중재인 보수를 일률적으로 5만 엔의 시간단가로 정한 것이다.

또한 3인중재의 경우, 중재인 보수의 총액 상한에 대해서도 중요한 변경이 있었다. 기존 규칙에서는 단독중재인의 경우 '중재인보수상한액×3×0.8'로 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중재인 간에 보수액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는 각 중재인에 대한 보수액 상한을 설정하였다. 즉, 단독중재인을 기준으로, 각 중재인에 따른 업무부담의 차이나 중재절차의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선임 중재인은 단독중재인 보수상한액의 80%로, 의장중재인은 단독중재인 보수상한액의 120%로 세분화한 것이다. 중재인 보수액을 절차참여시간에 따라 체감시키는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한 절차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도 2019년 JCAA 상사중재규칙의 특징 중 하나이다.

## Ⅲ.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의 제정

### 1. 개관

2019년 JCAA의 중재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로는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이라는 보완형 중재규칙을 새롭게 제정한 일이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특유한 중재제도 중 하나로 보고되었는데,[57] 지나친 당사자주의에 따른 비효율적 절차과정들을 감소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한다.[58]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주의(adversarial procedure)와 직권탐지주의(inquisitorial procedure)가 있다.[59] 영미법계의 법원은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

55) JCAA 상사중재규칙 제102조 제2항.
56) 齋藤梓, 前揭報告書(주32), p.7.
57) David Gilmore *et al.*, "New 2019 JCAA Rules: Is Three a Crowd?", Herbert Smith Freehills LLP, Feb. 8, 2019, <http://arbitrationblog.kluwerarbitration.com/2019/02/08/new-2019-jcaa-rules-is-three-a-crowd/> (최종검색일 2019. 3. 20).
58) 齋藤梓, 前揭報告書(주32), p.8.
59) Nigel Blackaby *et al.*,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6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가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하며 법원은 어느 주장과 입증이 옳은지를 판단하는데 그치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에 대륙법계의 법원은 직권탐지주의를 채택하여 당사자들의 주장을 법원 스스로 조사하여 판단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돕게 하고 있다.[60] 이러한 영향을 받아, 영미법계의 중재절차는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 대륙법계의 중재절차는 직권탐지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스스로 수집하는 것과 당사자로부터 구하는 것이 모두 허용된다. 국제중재절차는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실무적 관례이다.

그러나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중재판정부의 분쟁파악 방법이나 그에 대한 대처방식이 비공개화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61] 물론 최종적인 중재판정에 의해 그 방법과 방식들은 판명되지만, 상소라는 제도적 수단이 없는 중재절차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중재절차를 분쟁해결절차의 하나로 선택하는데 있어, 그 선택을 꺼리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었다.[62]

이처럼 지나친 당사자주의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은 중재절차의 과정에서 당사자와 중재인 간에 실질적인 '대화' 과정을 의무화하여,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분쟁해결의 방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즉,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은 당사자주의에 따른 절차의 장기화 또는 광범위한 중재판정문 작성에 따른 분쟁해결비용의 상승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은 기본적으로 JCAA 상사중재규칙의 구조와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①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와의 '대화'를 의무화한 점, ② 중재인 보수를 정액화하여 당사자에게 분쟁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자 한 점 등은 JCAA 상사중재규칙과는 크게 다른 점들이다.[63]

중재인 보수와 관련하여,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은 청구금액에 따라 보수액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여, 이를 정액화 하였다. 예를 들어, 1억 엔 이상 50억 엔 미만의 경우, 단독중재인의 경우에는 300만 엔, 3인중재의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은 400만 엔, 당사선정 중재인은 250만 엔으로 정액규정을 마련해 두었다. 이 또한 당사자에게 분쟁해결비용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

2015, p.356.

60) 목영준・최승재, 「상사중재법」, 개정판, 박영사, 2018, p.182.

61) 국제중재실무상으로도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주의와 직권탐지주의 중 어느 절차를 택할 것인가는 역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다. 중재제도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자치에 있으므로, 중재절차의 진행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역시 당사자 자치라는 중재의 기본원칙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당사자 자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일 것이다.

62) 영국중재법(Arbitration Act 1996)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 간의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에게 절차 및 증거에 관한 결정권한을 주고, 그 권한에 중재판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시키고 있다(영국중재법 제34조 제1항・제2항 (g)).

63) 道垣内正人, 前揭論文(주12), p.7.

## 2. 중재판정부와 당사자 간의 대화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의 가장 독특한 점으로는 중재판정부와 당사자 간의 대화를 의무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중재절차의 최대한 빠른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주장을 정리하여 이에 기초한 잠정적인 쟁점사항들을 서면으로 제시하고(대화1), ② 절차의 진행 단계에서 증인신문을 위한 심리절차의 개최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기정리된 쟁점에 관한 심증을 서면으로 공개하도록(대화2)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규정의 부수효과로서, 중재판정의 간결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1) 중재판정부의 당사자주장정리 및 쟁점의 제시 (대화1)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상 중재판정부와 당사자 간 이루어져야 할 첫 번째 대화로는 중재판정부가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 주장을 정리하여 이에 기초한 잠정적인 쟁점사항들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둔다.

첫째,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가 개시된 이후 가장 빠른 단계에서, ① 당사자 청구와 관련한 사실상 및 법률상 근거에 대해 주장을 정리하고, ② 이를 전제로 한 잠정적인 사실상 및 법률상의 쟁점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64]

둘째,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한까지, 중재판정부가 제시한 당사자주장의 정리 및 쟁점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밝히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65]

셋째,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진술한 의견을 고려하여 당사자주장의 정리 및 쟁점을 수정할 수 있고,[66] 또는 당사자가 가필·수정한 정리를 당사자주장의 정리 부분으로 그대로 기재할 수 있다.[67]

넷째, 이후의 절차진행에 따라, 당사자주장의 정리에 관해 가필·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는 그 취지를 판정부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기상의 부적절을 이유로 해당 신청을 거절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 의해 가필·수정된 당사자주장의 정리를 당사자주장의 정리 부분으로 채택할 수 있다.[68]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상 첫 번째 대화(대화1)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에 의한 적절한 절차상의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의 '초기단계'에서 ① 주장정

64)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 제48조 제1항.
65)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 제48조 제2항.
66)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 제48조 제3항.
67)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 제48조 제4항.
68)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 제48조 제5항.

리, 쟁점의 제시 및 이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와 ② 가필·수정의 기회라는 2가지 사항을 당사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화과정을 통해, 당사자와 중재판정부 간에 중재절차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절차 참여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절차과정 중에 당사자주장의 정리서면과 쟁점사항들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되므로, 중재판정문 작성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시간적 비용절감의 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사안의 쟁점사항들을 전체적이며 구체적으로 정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때로는 그러한 결과가 반드시 생산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의 운용과정상 극복해가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69]

### (2) 중재판정부의 잠정적 판단의 제시 (대화2)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상 중재판정부와 당사자 간에 이루어져야 할 두 번째 대화로는, 중재판정부가 절차의 중간단계에서 쟁점에 대해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자신들의 사고방식(考え方)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판정부는, 증인신문을 위한 심리기일 개최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의 주장 입증활동을 부족함이 없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하는 사항들을 가능한 한 정리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 사항들은, ① 중재판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상의 쟁점과 그에 대한 잠정적인 사고방식, ② 중재판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상의 쟁점과 그에 대한 잠정적인 사고방식, ③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들이다.[70]

둘째, 중재판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대화를 위해, 각 사항의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71]

셋째,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제시한 기한까지 각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에는 증인신문을 위한 심리기일의 개최여부에 대한 의견도 포함될 수 있다.[72]

넷째,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의견을 감안하여 증인신문을 위한 심리기일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73]

다섯째, 당사자에게 제시된 중재판정부의 잠정적인 견해는 이후의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69) 道垣內正人, 前揭論文(주12), p.8.
70)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 제56조 제1항.
71)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 제56조 제2항.
72)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 제56조 제3항.
73)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 제56조 제4항.

구속하지 않는다.[74]

여섯째, 당사자는 중재인이 제시한 잠정적인 견해를 이유로 해당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75]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상 두 번째 대화(대화2) 규정은, 중재절차의 '중간단계'에서 중재판정부가 해당 쟁점에 대해 잠정적으로 파악하는 사고방식을 공개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통상 증인신문을 위한 심리기일의 개최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따라서 본 규정은 심리기일 개최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주장내용의 입증사항들을 주지시켜 주장의 입증활동을 함에 있어 과부족이 없이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요한 점으로는 중재판정부가 가능한 한 쟁점에 대한 잠정적 사고방식들을 정리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잠정적 판단의 공개를 의무화한 것인데, 이는 사안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절차과정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상당한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본 규정은 중재판정부의 잠정적인 견해가 추후 중재판정부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문화하였고, 이렇게 공개된 견해를 이유로 해당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도 제기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실무적으로 당사자의 법률대리인들은 중재인들의 언행 등을 관찰하여 당사자에게 판정의 방향을 보고하기도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설정하기도 한다.[76] 예를 들어, 판정의 방향을 인식한 당사자들은 분쟁에 관해 합의를 하거나 화해중재판정과 같은 형태로 분쟁을 종료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상 두 번째 대화(대화2) 규정은 사안을 바라보는 중재판정부의 시각을 서면화·공개화 함으로써 중재판정의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각 당사자들의 대응책들 역시 보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 2. 중재인 보수의 정액화

중재판정부와 당사자 간의 대화 규정 이외에,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상 특징적인 점으로는 중재인 보수를 정액화 하였다는 점이다.[77] JCAA 상사중재규칙상 중재인 보수는 상한액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칙으로는 시간제보수 방식에 의해 산정된다. 반면에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은 청구금액에 따라 보수를 정액화하여 금액상한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74)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 제56조 제5항.
75)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 제56조 제6항.
76) 道垣內正人, 前揭論文(주12), p.8.
77) 齋藤梓, 前揭報告書(주32), p.8.

단독중재인의 경우와 3인중재에 의한 경우로 각각 구분되어 있다.

첫째, 단독중재의 경우, 중재인 보수는 다음 표와 같다.[78]

〔표1〕 단독중재의 경우, 중재인 보수

| 청구금액 | 중재인 보수 |
|---|---|
| 5000만 엔 미만 | 100만 엔 |
| 5000만 엔 이상 1억 엔 미만 | 200만 엔 |
| 1억 엔 이상 50억 엔 미만 | 300만 엔 |
| 50억 엔 이상 100억 엔 미만 | 400만 엔 |
| 100억 엔 이상 | 500만 엔 |

중재인 보수의 경제적인 가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산정에 곤란한 청구의 경우에는 그 경제적 가치를 7,000만 엔으로 본다.[79]

둘째, 3인중재의 경우, 중재인 보수는 다음 표와 같다.[80]

〔표2〕 3인중재의 경우, 중재인 보수

| 청구금액 | 당사자 선임 중재인의 보수 | 제3중재인(의장중재인)의 보수 |
|---|---|---|
| 5000만 엔 미만 | 70만 엔 | 120만 엔 |
| 5000만 엔 이상 1억 엔 미만 | 150만 엔 | 250만 엔 |
| 1억 엔 이상 50억 엔 미만 | 250만 엔 | 400만 엔 |
| 50억 엔 이상 100억 엔 미만 | 350만 엔 | 500만 엔 |
| 100억 엔 이상 | 400만 엔 | 600만 엔 |

만약 중재인 보수의 경제적인 가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산정에 곤란한 청구의 경우에는 단독중재의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7,000만 엔).[81]

이렇게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이 중재인 보수와 관련하여 정액제를 채택한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82]

첫째, 당사자 특히 각 기업계 및 산업계의 사람들이 갖는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중재인이 담당하는 업무는 본질적으로 법관의 직무와 마찬가지로 고도의 청렴성과 결백성

78)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 제94조 제1항.
79)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 제94조 제2항.
80)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 제95조 제1항.
81)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 제95조 제2항.
82) 道垣內正人, 前揭論文(주12), pp.9-10.

(noble integrity)이 요구된다. 즉, 이러한 가치들이 배제된 채, 단지 보수만을 목적으로 중재업무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들을 반영하여 보수정액제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당사자로서는 가능한 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원한다. 그럼에도 중재절차가 장기화되면, 시간제보수 방식에 의해 중재인 보수 역시 함께 상승하게 된다. 중재인들이 이를 악용하여 중재절차를 지연시키는 상황들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정액제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셋째, 당사자들은 법률대리인과의 수임계약에서 시간제보수 방식이 아닌 성공제보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시간제보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중재절차 상황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경향이 높고, 최악의 상황으로 당사자와 중재인 간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정액제 방식이 고려된 것이다.

중재인의 임무는 분쟁의 해결에 있으므로, 당사자 간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중, 화해합의 또는 화해중재판정 등으로 중재절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상 중재인 보수는 원칙적으로 감액되지 않는다.[83]

# Ⅳ. UNCITRAL 중재관리규칙의 개정

## 1. 개관

UNCITRAL 중재규칙은 법적,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비기관중재를 위한 규칙으로서, 계약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을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하도록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이 규칙이 적용된다.[84]

JCAA에 의한 중재를 처음으로 시도하는 외국기업이나 외국중재인이 국제표준으로서 UNCITRAL 중재규칙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보완 차원에서, JCAA는 오래전부터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의 관리 및 절차에 관한 규칙'을 운용하고 있었다.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 최종 개정된 바 있는데, 이번 2019년 개정에서는 기존 명칭에서 'UNCITRAL 중재관리규칙'으로 변경되었다.[85]

UNCITRAL 중재관리규칙은 JCAA를 사무국으로 활용하면서 UNCITRAL 중재규칙에

83)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 제96조 제1항.
84) 목영준·최승재, 전게서(주60), p.43.
85) UNCITRAL 중재관리규칙의 이번 개정에서는 영문본을 정본으로 하였다.

의한 중재를 진행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정한 관리규칙이다. 따라서 이 규칙은 중재기관이 관여하지 않는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 또는 임시중재를 위해 제공되며, 기관중재에 비해 보다 경제적이며 절차적 유연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을 갖는다. 나아가 중재절차에 있어서의 비밀보호도 강화되며, 어떠한 점에서는 기관중재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86]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JCAA는 UNCITRAL 중재규칙을 절차규칙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서의 약간의 사항만을 정하는 일종의 관리 매뉴얼이 필요했고, 그러한 관리 매뉴얼로서 UNCITRAL 중재관리규칙을 제정・운용하였던 것이다. 중요한 점은 UNCITRAL 중재관리규칙상 JCAA의 독자적인 절차사항들은 가능한 한 추가되지 않고 필요 최소한의 보충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87] 이번 개정에서는 실질적인 내용변경은 없었으나 중재인 보수와 관련한 일부 규정의 변경이 있었다.

## 2. 중재인 보수

일반적인 관리규칙으로서 중요한 점은 ① 중재인 보수에 관한 규정과 ② 중재절차에 관한 관리요금에 관한 규정일 것이다. UNCITRAL 중재관리규칙상 ②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관리요금규정이나 긴급보전조치명령의 신청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제외하면, JCAA 상사중재규칙과 동일한 관리요금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중재인 보수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별 규정들이 이번 개정에서 신설되었다.

첫째, 중재인 보수는 시간제보수 방식으로 하고, 보수액의 통화 표시는 미화 달러로 표시하였다.[88]

둘째, 중재인 보수의 산정에 있어, 시간단가는 500달러에서 1,500달러까지의 범위 내에서 중재인의 경험이나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고, 적절한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JCAA가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의장중재인의 중재인보수 시간단가는 다른 중재인의 시간단가보다 낮을 수 없고,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JCAA는 중재인 보수의 시간단가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89]

셋째, 중재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JCAA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절차의 중간단계에서도 중재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90]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500달러에서 1,500달러 범위 내에서 JCAA가 정하

86) 谷口安平・鈴木五十三 (編),「國際商事仲裁の法と實務」, 丸善雄松堂, 2016, p.74.
87) 齋藤梓, 前揭報告書(주32), p.7.
88) JCAA 'UNCITRAL 중재관리규칙' 제20조 제1항.
89) JCAA 'UNCITRAL 중재관리규칙' 제20조 제2항.
90) JCAA 'UNCITRAL 중재관리규칙' 제22조 제2항.

는 시간단가의 시간제보수 방식을 규정한 점이나 미화 달러로 보수액 표시를 정한 것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중재인들을 JCAA에서 중재를 맡게 하도록 한 인센티브적 성격이 강하다. 또한 대형사건의 경우 절차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므로 중재인 보수의 중도지급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Ⅴ. JCAA 중재제도 개혁의 취지와 시사점

## 1. JCAA 각 규칙의 적용관계

JCAA는 기존 규칙인 '상사중재규칙'과 'UNCITRAL 중재관리규칙'을 개정하고, 새롭게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총 3가지의 중재규칙들을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운용하고 있다. 여기서 각 규칙들의 적용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91]

첫째, 2018년 12월 31일까지 JCAA 상사중재규칙 또는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해 중재절차를 행한다는 합의가 있고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중재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2019년 개정된 규칙들에 의해 절차가 진행된다.

둘째, 중재합의의 시점과 관련 없이, 중재합의상 준거규칙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지 JCAA 하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고,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중재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2019년 개정 JCAA 상사중재규칙'에 의해 절차가 진행된다.[92]

셋째, 2018년 12월 31일 전에 중재신청이 제기되어 중재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개정 전의 JCAA 상사중재규칙 또는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의 관리 및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후의 절차는 2019년 개정 규칙들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진행된 중재절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넷째,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중재합의에 그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중재인이 선임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단계라면,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로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93]

91) 道垣內正人, 前揭論文(주12), p.11.
92) JCAA 상사중재규칙 제3조 제2항.
93) JCAA 상사중재규칙 제3조 제3항.

## 2. 시사점

JCAA의 2019년 개정에서는 ① 분쟁해결에 관한 비즈니스 업계의 다양한 요청에 대응하고, ② 중재를 통한 국제거래상의 분쟁해결을 일본에 유치함으로써 인바운드(inbound)적 경제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94]

먼저 2019년 개정 JCAA 상사중재규칙의 경우에는,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중재인 조사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중재인 보조자 이용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투명성 확보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재인 보수의 상한액을 일괄적으로 정함으로써 당사자에게 비용지불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였다. 이외에도 중재판정 시 소수의견의 제시를 명시적으로 금지시켰고, 신속절차 규정 역시 청구금액에 따른 세분화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JCAA의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로는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의 제정이다.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은 JCAA 상사중재규칙과 기본적인 체계는 동일하나 중재판정부와 당사자 간의 의무적인 대화절차를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JCAA의 UNCITRAL 중재관리규칙 역시 중재인 보수 규정 부분을 개정하여, 비기관중재의 경우에도 JCAA 관리 차원의 절차운용적 이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상과 같은 3가지 중재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향후 아시아 지역에서 JCAA가 확보할 수 있는 중재거점으로서의 위치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점에서 JCAA의 2019년 중재제도 개혁 현황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중재활성화를 도모하는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제도적 인프라 개선에 적지 않은 시사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하 대한상사중재원이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2019년 JCAA 상사중재규칙상 도입된 중재인 조사의무에 관한 부분이다. 중재인의 조사의무는 이해상충 사실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중재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적정한 고지의무 이행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학설 및 판례로만 인정되어온 의무가 기관 중재규칙상 도입된 것인데, 과연 우리나라 KCAB 중재규칙에서도 이를 인정할 실익이 있을까 하는 점이 문제된다.

우리나라 중재법 제13조에서는 중재인 기피사유 항목에,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사람 또는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재인 고지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KCAB 국내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도, 중재법과 동일한 중재인 고지의무를 규정해 두고 있다.[95] 다만 중재인의 조사의무에 관해서는 학설 및 판

94) 道垣內正人, 前揭論文(주12), p.2.

례상 크게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96][97]

생각건대, 중재인의 조사의무는 중재인이 고지의무위반 청구를 당한 경우 그에 대한 항변수단으로서 조사의무의 이행여부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 만약 중재인이 이해상충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의무위반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에는 중재판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생긴다. 따라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사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를 항변함으로써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조사의 범위와 실질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이는 역시 사안별 접근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중재인 취임 이후에도 계속적인 조사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 자체가 중재인에게 과도한 의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으나, 조사의무의 부담이 추후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 발생, 비용적 손해 및 중재판정의 취소라고 하는 부담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재인이 고지대상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음에도 합리적인 조사를 행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고, 부지의 항변으로도 대항할 수 없다는 접근방식으로 고지의무위반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사의무를 통해, 중재인은 보다 적극적인 이해상충 고지의무를 달성할 동기를 갖게 될 것이며, 그로써 당사자들에게는 중재인의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일정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의 범위와 실질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그 합리성의 수준을 정하면 될 문제이다.

둘째, 2019년 JCAA의 제도 개혁 중 눈여겨 볼만한 것은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의 제정이다.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은 중재판정부와 당사자 간의 대화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데, ① 초기 중재절차단계에서의 대화와 ② 중기 중재절차단계에서의 대화를 각각 규정해 두고 있다. 초기 중재절차단계에서의 대화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 주장을 정리하여 이에 기초한 잠정적인 쟁점사항들을 서면으로 제시하게끔 하고, 중기 중재절차단계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쟁점에 대해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고방식을 제시하게끔 하는 것이다. 양자 모두 중재판정부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중재절차상의 의무 대화방식이 과연 합리적일까 하는 점에서 그 도입 실익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일단 중재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사안의 쟁점사항들을 전체적이며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이 반드시 생산적인 것만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시간들이 소요될 수 있다. 나아가 초기 단계부터 당사자와 중재판정부 모두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도

95) KCAB 국내중재규칙 제25조 제1항・제2항; KCAB 국제중재규칙 제10조 제2항.

96) 이에 관하여는 김영주, 전게논문(주20), pp.242-244 참조.

97) 중재인 고지의무와 중재판정 취소여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의 분석에 관하여는 신한동, “중재인의 고지의무에 관한 고찰 - 한국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1, pp.3-20 참조.

있다. 중재절차의 중간 단계에서 요구되는 대화 역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사안의 쟁점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고방식을 중간 단계에서 공개하는 것 역시 사후적인 최종판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판정의 방향을 인식한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에 관해 자체 합의를 하거나 화해중재판정과 같은 형태로 분쟁이 종료될 수도 있겠으나, 이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화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즉, 공격과 방어라는 분쟁해결절차상의 특징이 왜곡되어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중재판정부의 공개된 견해를 이유로 해당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이 지리멸렬하게 이어지는 경우에는 절차가 장기화되어 사안의 비본질적인 쟁점들이 다루어질 경향도 높다. 지나친 당사자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중재의 기본원칙은 어디까지나 당자자 자치에 있고, 그 점에서 당사자 자치를 침해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JCAA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상의 중재판정부와 당사자 간의 의무적 대화에 관해서는 그 도입실익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JCAA의 UNCITRAL 중재관리규칙의 중재인 보수 규정 부분이다. 비기관중재로서 UNCITRAL 중재규칙을 활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절차적 관리의 필요에서 중재기관을 이용할 것이다. JCAA는 이와 같은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를 기관 하의 절차로 끌어들이기 위해 UNCITRAL 중재관리규칙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KCAB의 향후 중재규칙 활성화 정책 방향에서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JCAA의 UNCITRAL 중재관리규칙상 중재인 보수 규정은 임의중재를 적극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개정된 JCAA의 UNCITRAL 중재관리규칙에 따르면,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500달러에서 1,500달러 범위 내에서 시간단가를 시간제보수로 정하고 있고, 보수액 역시 미화 달러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재인 보수의 중도지급 규정도 마련하였는데, 이러한 점 모두 JCAA만의 차별성을 강화한 개정들로 볼 수 있다. 즉,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중재인들이 JCAA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들을 제공하여 국제분쟁사건의 접수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외국기업이나 외국중재인이 국제표준으로서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르고자 하는 경우도 상당할 것이므로, JCAA의 UNCITRAL 중재관리규칙과 같은 중재규칙의 정비도 중재활성화 차원에서 논의될 만하다고 본다.

# Ⅵ. 결 론

국제거래의 분쟁해결로서 중재사건을 자국에 유치하는 것은 단순한 인바운드적 경제효과만을 낳는 것은 아니다.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자국 기업의 분쟁해결 편리성을 높일 수도 있고, 중재라는 법치주의의 기반 인프라를 국제사회에 제공하여 해당 국가의 국제적 지위 향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도 하다. 이에 상당수의 국가 또는 중재기관들에서는 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해 중재법규를 개정하거나 중재관련 시설의 제도적 정비를 경쟁적으로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98] 여기서 '중재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재지로서의 선호도나 국제성 또는 중재절차의 중립성 등이 필수 요소라 할 수 있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각 중재기관들이 보유한 관련 중재규칙들이 얼마나 효율적이며 공정하고 국제적인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재제도의 이용률 확대와 국제중재의 유치를 위해 정부 주도의 '2019－2023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지난 2018년 발표된 바 있다.[99] JCAA 역시 이와 같은 정부 주도의 중재제도 육성정책의 차원에서, 기존에 운용 중이던 상사중재규칙과 UNCITRAL 중재관리규칙을 개정하였고, 새롭게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각각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운용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JCAA의 2019년 각 중재규칙들의 제・개정 현황들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개혁의 의미, 취지 및 시사점 등을 검토해 보았다. 논문의 결론에 갈음하여, JCAA의 2019년 중재제도 개편에 대한 몇 가지 개별적인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해 보고자 한다.

첫째, 2019년 JCAA 상사중재규칙상 도입된 중재인의 합리적인 조사의무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재인의 조사의무는 이해상충 사실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중재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적정한 고지의무 이행여부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IBA 이해관계 지침에서도 실무적인 관행으로 중재인의 조사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중재인이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항변수단으로서 조사의무의 이행여부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제도 도입의 실익이 있다 할 것이다. 2019년 개정 JCAA 상사중재규칙상으로는 "중재인 취임 시, 취임 이후 그러한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고지만으로는 중재인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조사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조사의무를 통해, 중재인은 보다 적극적인 이해상충 고지의무를 달성할 동기를 갖게 될 것이며, 그로써

98) 성준호, "중재산업진흥법의 주요내용과 발전적 운용", 「중재연구」, 제27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7, p.37.
99) 박초롱, "법무부 '내년에 중재교육원 설치 … 중재 전문인력 양성'", 연합뉴스 2018. 12. 31, <https://www.yna.co.kr/view/AKR20181231264800004> (최종검색일 2019. 4. 20).

당사자들에게는 중재인의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일정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JCAA는 2019년 인터랙티브 중재규칙이라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 규칙은 중재판정부와 당사자 간의 대화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내용을 담은 규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재절차상의 의무대화방식이 실무상 과연 합리적인지에서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일단 중재절차의 초기 단계부터 사안의 쟁점사항들을 전체적이며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이 반드시 생산적인 것만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각 당사자와 중재판정부 모두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될 여지도 있다. 중재절차의 중간 단계에서 요구되는 대화 역시 사안의 쟁점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중간 단계에서 공개하는 것이므로, 이 자체가 사후적인 최종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판정의 방향을 인식한 당사자들이 비합리적인 화해를 이룰 수도 있으며, 공격과 방어라는 분쟁해결절차상의 특징이 왜곡되어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셋째, JCAA의 UNCITRAL 중재관리규칙의 2019년 개정사항을 보면, UNCITRAL 중재규칙 활용이라는 임의중재절차를 JCAA 하의 절차로 편입시키기 위한 선도적인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중재인 보수 규정과 관리 규정들이 그것인데,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500달러에서 1,500달러 범위 내에서 시간단가의 시간제방식의 중재인 보수를 정하고 있다거나 보수액 역시 미화 달러로 표시하도록 한 점, 나아가 중재인 보수의 중도지급이 가능한 점 등이 JCAA만의 차별성을 강화한 개정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정들이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중재인들을 JCAA 중재인리스트에 끌어들여 결국에는 JCAA의 국제중재사건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유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외국기업이나 외국중재인이 국제표준으로서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르고자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이므로, UNCITRAL 중재관리규칙과 같은 관리규칙의 정비도 중재활성화 차원에서 논의될 만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김갑유 외 (편), 「중재실무강의」, 개정판, 박영사, 2017.

김광수, “동북아시아 국제상사중재의 과제와 전망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7.

김상찬, “일본의 ADR법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6.

김선정, “일본의 금융분야 ADR에 관한 검토”, 「중재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0.

김언숙, “일본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 적용법규와 승인집행거부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0.

김태훈・차경자,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규칙의 최근 개정내용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2.

김영주, “중재인의 고지의무와 합리적 조사의무 - 일본 최고재판소 2017년 12월 12일 결정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8.

성준호, “중재산업진흥법의 주요내용과 발전적 운용”, 「중재연구」, 제27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7.

신한동, “중재인의 고지의무에 관한 고찰 - 한국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1.

목영준・최승재, 「상사중재법」, 개정판, 박영사, 2018.

최준선, 「국제거래법」, 제11판, 삼영사, 2018.

岡田紀彦, “仲裁人が,当事者に對して仲裁法18條4項にいう「自己の公正性又は獨立性に疑いを生じさせるおそれのある」事實を開示し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同項所定の開示義務に違反したというための要件 － 最三小決平成29・12・12”, 「ジュリスト」, 1517号, 有斐閣, 2018.

小島武司・猪股孝史, 「仲裁法」, 日本評論社, 2014.

谷口安平・鈴木五十三 (編), 「國際商事仲裁の法と實務」, 丸善雄松堂, 2016.

手塚裕之・河端雄太郎, “國際商事仲裁の新潮流と仲裁法制のさらなる現代化”, 「自由と正義」, Vol. 67 No. 7, 日本弁護士連合會, 2016.

道垣內正人, “JCAAの仲裁制度の改革について: ビジネス界のあらゆるニーズに對応する3つの仲裁規則の紹介”, 「JCAジャーナル」, 66巻 1号, 日本商事仲裁協會, 2019.

道垣內正人, “日本商事仲裁協會(JCAA)の新しい動き－3つの新仲裁規則の施行等”, 「NBL」, 1141号, 商事法務, 2019.

中野俊一郎, “仲裁人が当事者に對して仲裁法18條4項にいう『自己の公正性又は獨立性に疑いを生じさせるおそれのある』事實が生ず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抽象的に述べたことは、同項にいう『既に開示した』ことに当たるか(最高裁平成29年12月12日第3小法廷決定)”, 「民商法雜誌」, 第154卷 第6号, 有斐閣, 2018.

中村達也, 「仲裁法の論点」, 成文堂, 2017.

三木浩一・山本和彦 (編), 「新仲裁法の理論と實務」(ジュリスト增刊), 有斐閣, 2006.

Blackaby, Nigel, Constantine Partasides, Alan Redfern, & Martin Hunter,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6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Born, Gary B.,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Vol. Ⅲ: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2n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14.

# ABSTRACT

## 2019 Reform of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JCAA) Arbitration Rules

Young-Ju Kim

This paper reviews 2019 new arbitration rules of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JCAA). JCAA has amended its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nd its Administrative Rules for UNCITRAL Arbitration. Also, it has introduced a new Interactive Arbitrations Rules. These new rules take effect from 1 January 2019.

First, principal amendments of JCAA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re such as arbitrator impartiality, tribunal secretaries, no dissenting opinions, expedited proceedings, arbitrator fees, administrative fees.

Second, JCAA's new Interactive Arbitration Rules compel communication from the arbitral tribunal to the Parties and introduce a system of fixed compensation for arbitrators.

Third, JCAA's Administrative Rules for UNCITRAL Arbitration are designed to provide the minimum essentials to allow the UNCITRAL Rules to be overseen by an institution. The only significant updates focus on arbitrator remuneration.

This paper presents the intent and some implications of JACC's 2019 new rules for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arbitration rules. Also, it seeks to provide a meaningful discussion and improvement on the facilitating of arbitration system in Korea.

**Key Words** :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JCAA), JCAA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JCAA Interactive Arbitration Rules, JCAA Administrative Rules for UNCITRAL Arbitration, Japan Arbitration Act, An Arbitrator's Duty of Reasonable Investigation